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4 호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영종구규칙 제65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 시

- 인천광역시영종구고시 제2026-1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제2026-20호))
- 인천광역시영종구고시 제2026-195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제2026-21호))

공 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5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523호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용재결(3차) 신청서류 열람 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527호 (2026년 9월 지방세(지방소득세) 공시송달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531호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536호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53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153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영종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사유

- 균형있고 합리적인 직급·직렬 체계 마련
- 시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반영

☐ 주요내용

-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변경(안 별표)
 - 총 정원 : 772명(변동없음)
 - 본 청 : 행정·별정6(1) → 별정6(1)
 행정·별정7(2) → 별정7(2)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손 화 정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 제65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단위: 명)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총 계	772	582	20	60	11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65	575	20	60	110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과학기술서기관	1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2	2			
5급 소계	42	28	2	6	6
행정	13	11	2		
의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6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6급 소계	165	138	4	10	13
행정	61	53	3		5
세무	8	8			
사회복지	5	5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1	1			
시설	10	10			
행정·세무	6	5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7	11			6
행정·공업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1	21			
행정·방송통신	1	1			
보건·간호	6			6	
행정·공업·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운전	3	2	1		
사무운영	2	1			1
7급 소계	248	196	8	17	27
행정	97	73	7		17
세무	14	14			
전산	4	4			
사회복지	24	14			10
공업	4	4			
농업	1	1			
녹지	4	4			
해양수산	2	2			
보건	2	1		1	
간호	3			3	
보건진료	1			1	
환경	4	4			
시설	24	2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9	9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9	9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보건 · 의료기술	2			2	
보건 · 간호	5			5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4			4	
운전	9	8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사무운영	1		1		
8급 소계	227	158	4	21	44
행정	91	68	4		19
세무	6	6			
전산	2	2			
사회복지	25	12			13
공업	1	1			
농업	3	3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6	3		3	
의료기술	1			1	
간호	14	1		7	6
환경	4	4			
시설	15	1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행정 · 세무	1	1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회복지	15	9			6
행정 · 공업	2	2			
행정 · 녹지	1	1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2	2			
행정 · 환경	3	3			
행정 · 시설	4	4			
행정 · 방재안전	2	2			
전산 · 세무	1	1			
공업 · 시설	1	1			
녹지 · 시설	1	1			
보건 · 간호	6			6	
간호 · 보건진료	1			1	
시설 · 방재안전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운전	4	3		1	
9급 소계	76	49	2	5	20
행정	29	16			13
세무	3	3			
사회복지	9	4			5
숙기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3			3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운전	1				1
별정직 계	6	6			
별정6급상당 계	2	2			
별정(비서요원)	2	2			
별정7급상당 계	3	3			
별정(비서요원)	3	3			
별정8급상당 계	1	1			
별정(비서요원)	1	1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역

허가 번호	허가일	위 치	면적	목 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 간	
						당초	변경
제2026 - 20호	2026. 9. 1.	인천광역시 영종구 덕교동 산107번지 구거 공유수면	79㎡	근린생활시설(해수방) 에 따른 해수물탱크 적치 및 부지 사용	최명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08, 2층), 강연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덕교동 6-20번지)	2025. 9. 11. ~ 2026. 9. 10.	2026. 9. 11. ~ 2027. 9. 10.

2026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허가 번호	허가일	위 치	면적	목 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 간
제2026 - 21호	2026. 9. 3.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1218-6번지 구거 공유수면	0.5㎡	운북동 376번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매설	인천도시가스(주) (인천광역시 서해구 백범로 934번길 23)	2026. 9. 3. ~ 2031. 9. 2.

2026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76호(2024. 4.15.)로 실시계획(최초)인가 및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5-85호(2025. 5.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명: 전소교 ~ 하늘도시(송산)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실시계획 변경사유

- 분할 측량 결과 및 용지 소유자, 권리자 변경사항 반영
-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운남동 169-11번지 ~ 운남동 170-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6호선)
- 명칭: 전소교 ~ 하늘도시(송산) 간 도로개설공사

4.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규모: 연장(L) = 389m, 폭원(B) = 10m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구분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비 고
당초	2024. 4.15.	2026.12.31.	
변경	2024. 4.15.	2027.12.31.	1년 연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2026. 9. 7. ~ 2026. 9. 20.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도시계획과, 032-760-7574, 인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8층)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건설과, 032-760-7853, 인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8층)

11.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

주 민 의 견 서

공 고 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사업예정지	인천 영종구 운남동 169-11번지 ~ 운남동 170-5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류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자 (서명)

영종구청장 귀하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3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280호(2023. 12. 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제2024-259호(2024. 12. 11.), 제2025-28호(2025. 2. 24.), 제2025-158호(2025. 9. 19.)로 변경계획인가 고시된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사 업 명 :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3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165-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7. ~ 2026. 9. 21.(15일간)
6. 열람장소 및 방법 : 영종구청 건설과 방문 또는 전화(☎760-7854)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영종구청 건설과(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조서(물 건)

[별지 제1목록]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3차) (26수용0019)

+1물 건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186-54	영농보상 임차/선인장,감자 등/경작 면적:262㎡	1식	박○찬	인천광역시 중구 마장포로5*번길2*(중산동)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1건			1인		0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정*결외 150인
- 서류의 송달지: 인천광역시 영종구 마시란로
- 서류의 명칭: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위의 서류를 2026년 8월 11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하지 못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문*미 외 135명 [붙임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인천광역시 영종구 백운로414번길 63-18 외 135개소
- 서류의 명칭: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2026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26년 8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1. 공고제목 : 청결유지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3. 공고대상

순번	성명	주 소	대상지	처분내용	송달불가사유
1	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 ***동 ***호	영종구 윤북동 742-12	청결유지명령 (2차)	폐문부재
2	이*영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서로 **	영종구 중산동 1940-6	청결유지명령 (2차)	폐문부재
3	유***케* ****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번길 *_**, 에***빌딩 ***호	영종구 중산동 1886-5	청결유지명령 (2차)	폐문부재
4	김*욱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암*길 **	영종구 운서동 2668-1	청결유지명령 (1차)	폐문부재
5	고*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 ***동 ****호	영종구 운서동 3052-1	청결유지명령 (1차)	폐문부재
6	김*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 ***동 ****호	영종구 운서동 3052-4	청결유지명령 (1차)	폐문부재

- 4. 조치내용 : 2026. 9. 22.(화)까지 대상지 청결유지 이행(방치폐기물 처리)
- 5. 공고기간 : 2026. 9. 7.(월) ~ 2026. 9. 22.(화) (15일간)
- 6.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결유지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자원순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032-760-7406, FAX.032-760-74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3. 공고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반송 사유
1	김*선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중로***번길**, ***호	차량 이용 무단투기	폐문부재
2	유*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호	담배꽁초 무단투기	폐문부재
3	윤*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동 *층 ***호	차량 이용 무단투기	폐문부재
4	아*신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동 ****호	담배꽁초 무단투기	폐문부재
5	임*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층	담배꽁초 무단투기	수취인불명
6	서*석	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 ***동 ****호	담배꽁초 무단투기	폐문부재
7	한*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번길**-*, ***동 *층 ***호	담배꽁초 무단투기	폐문부재
8	김*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번길**, ***호	담배꽁초 무단투기	폐문부재
9	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 ***동 ***호	1차 청결유지명령 미이행	폐문부재
10	아*영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서로 **	1차 청결유지명령 미이행	폐문부재
11	유***게*** **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번길 *,**, 에***빌딩 ***호	1차 청결유지명령 미이행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6. 9. 7.(월) ~ 2026. 9. 22.(화) (15일간)

5. 공고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자원순환과(☎032-760-7406, FAX.032-760-740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청 자원순환과 생활청소팀(☎032-760-7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심의회회의 제안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지정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지정 신청 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6. 9. 4.(금) ~ 9. 10.(목) 근무시간 내(9:00~18:00)
- 장 소 : 세무2과 (영종구청 3층, ☎ 032-760-7706)
- 비치서류 : 2026년도 예산서 및 2025년~2023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중구)
 - ※ 영종구 누리집(www.yeongjong.go.kr)에서 상시 열람 가능
 - ※ 금고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로 갈음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근무시간 내(9:00~18:00)
 -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세무2과 (영종구청 3층, ☎ 032-760-770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및 부수
 - 금고지정 신청서 1부
 - 금고지정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1부(원본1부, 사본10부)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	
6. 그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별표 1)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2)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 지연배상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이때 계약금액은 “2026년 일일 평균 수납 및 지출액”으로 한다.

10. 인계인수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약정체결 후 인계·인수를 위하여 인계인수 준비단을 구성하고 상호협의 하에 합동근무 실시
- 새로 지정된 구 금고 금융기관은 시 금고와 협조하여 세입금 집계, 공과금 납부, 세입사무 처리 등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1.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 현재 운영 중인 수납·지출·자금 등 전산시스템은 2026. 12. 31.까지 기존 금고에서 운영하며, 이후 신규 지정 구금고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 수납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의 구축·관제·유지보수·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12.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 「영종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시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영종구 세무2과 관계공무원이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1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으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구 누리집에 공개
- 기타 문의 : 영종구청 세무2과 (☎ 032-760-7706)

[별표 1]

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4) - 국내 평가기관(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전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7) (7) (4) (2)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계	21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나.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7)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그 밖의 사항	소계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일반원칙

-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5(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 가) 평가기준

-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 나) 평가방법

-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점)

가) 수시 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가)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1)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가)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가) 국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가)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가)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가)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가)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가)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바. 그 밖의 사항 (2점)

1) 탄소중립 기여도 (2점)

가)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